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042

제출연월일: 2024. 6. 27.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금을 징수하는 규정이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7헌가21, 2019. 12. 27.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5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2019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2항제2호의 개정 규정을 삭제한다.

법률 제2041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2항제5호의 개정 규정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별표 제13호를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의 제목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를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국민체육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				
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				
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u><삭 제></u>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부가금의 징수) ① 계정관	<u><삭 제></u>			
리기관이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가금을 징수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u>받아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은 골프				
장 시설 입장료의 10분의 1을				
<u>초과할 수 없다.</u>				
③ 계정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				
른 승인을 받으면 골프장 시설				
의 운영자에게 그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				

보반은 해당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그 시설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을 수납하여 계정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가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가 수납한 부가금을 내는 때에는 부가금 수납부 사본 등부가금 수납과 관련된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부가금의 징수 방법, 납부 시기 및 부가금 수납 관련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
 < 사 제>

 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제출한 자
- 2. (생략)
- ③ ~ ⑤ (생 략)

②	

제5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2.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193호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2019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 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제출한 자
- 3. (생략)
- ③ ~ ⑤ (생 략)

법률 제2041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4. (생 략)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 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제출한 자

일부개정법률

제5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2)	 	 	 	 	 	 _
	 	 	 	 	 	 _
	 	 	 	 _		

1. (현행과 같음)

<삭 제>

- 3.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41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2)	 	 	 	
			 _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